니오라코리아 정책 및 절차

Neora Korea, Ltd.(이하 "회사")의 브랜드 파트너(이하 "브랜드 파트너")로서, 귀하는 회사가 발행하고 배포하는 브랜드 파트너 정책 및 절차 매뉴얼(이하 "정책 매뉴얼")에 포함된 모든 규칙, 규정, 정책 및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 매뉴얼에 대한 개정안을 발행하거나 배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브랜드 파트너도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브랜드 파트너가 정책 매뉴얼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이나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스폰서, 업라인 리더 또는 회사의 윤리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정책 매뉴얼의 섹션 11에는 비즈니스의 윤리 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성실성, 정직성 및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되도록 섹션 11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TABLE OF CONTENTS

섹션 1:	브랜드파트너 십	
섹션 2:	자격보유 기간 및 갱신	
섹션 3:	제품 구매 및 판매	
섹션 4:	후원수당 지급	
섹션 5:	반품 및 환불	
섹션 6:	스폰서십	
섹션 7:	상속 및 조건	
섹션 8:	일반 규정	
섹션 9:	독점적 정보	
섹션 10:	상표, 인쇄물 및 광고	
섹션 11:	윤리 규정	

섹션 1: 브랜드파트너 파트너십

1.1 파트너십 등록.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a.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른 브랜드파트너를 후원할 수 있는 브랜드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활동중인 브랜드파트너의 후원을 받아야 하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브랜드파트너 등록신청서 및 동의서(이하"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뒤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b. 회사의 승인을 얻은 브랜드파트너만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보상플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다른 브랜드파트너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c. 브랜드파트너가 되기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은 없으며,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없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브랜드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d. 브랜드파트너 동의서를 승인할 권리는 전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는 또한 제출된 동의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거부사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1.2 자발적 구매. 브랜드파트너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브랜드파트너로 등록하고, 등록 킷(Enrollment kit)을 구매해야 합니다. 등록 킷 외에 브랜드파트너 자격 조건으로 제품, 서비스 또는 판매 보조물을 구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브랜드파트너로서 활동을 위한 필요에 의해 구매할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1.3 1인 브랜드파트너십. 브랜드파트너 가입을 위한 동의서는 브랜드파트너 1인의 명의로만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브랜드파트너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브랜드파트너 동의서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브랜드파트너 가입연령. 브랜드파트너 등록 희망자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성년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률상 대학생, 국가/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 법인,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방문 취업비자(H-2) 소지자 및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자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상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사람과 본 정책 매뉴얼 또는 Neora 해외 지사의 정책 매뉴얼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브랜드파트너 자격이 해지된 사람은 브랜드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1.5 법정 거주지. 브랜드파트너는 브랜드파트너 동의서를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제출된 브랜드파트너 동의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가 요구할 경우 브랜드파트너는 자신이 브랜드파트너 동의서가 제출된 국가에 거주하며,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에 접수된 브랜드파트너 동의서는 유효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국가에서만 브랜드파트너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거주지 변경. 브랜드파트너는 계좌가 개설된 국가에 유효한 납세자 신분을 취득하고 본 정책 매뉴얼 및 다른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1.7 브랜드파트너의 재가입. 기존에 브랜드파트너로 가입한 이력이 있는 브랜드파트너가 새로운 추천인에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가입 절차가 부적절(관련 법률 및 정책 매뉴얼 위반 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절차는 신규 브랜드파트너 가입 조건과 동일합니다.

a. 최근 6개월(180일)의 기간 동안 최소 1 QV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브랜드파트너의 경우, 본인이 재가입 의사가 있을 시, 탈퇴서 제출 후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b. 마지막 주문 후 반품이 있을 경우, 반품일로부터 6개월 후 탈퇴서 제출 후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c. 최초 가입 후, 제품 주문이 한 번도 없는 경우(등록 킷 및 마케팅 툴만 구매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6개월 후 탈퇴서 제출 후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d. 비활동으로 자동 종료된 경우, 자동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 a부터 e(d)항의 경우 탈퇴서는 비활동으로 자동 종료되기 이전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1.8 **배우자 및 공동(부부) 브랜드파트너십.** 부부는 하나의 브랜드파트너 자격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브랜드파트너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부부가 함께 하나의 브랜드파트너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부는 각각의 브랜드파트너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서로를 후원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브랜드파트너로 등록된 경우, 브랜드파트너 등록을 희망하는 미등록 배우자는 회사에 배우자(공동인) 추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부부는 공동(부부) 브랜드파트너로서 함께 이익을 도모하고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동(부부) 브랜드파트너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배우자는 공동(부부) 브랜드파트너십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동(부부) 브랜드파트너는 회사로부터 각종 정보와 후원수당을 받을 주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부부) 브랜드파트너는 상호 합의하에 회사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주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주사업자 변경은 1회에 한하여 변경 신청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부부) 브랜드파트너에 대한 자격 제한, 자격 정지 및 자격 해지 등의 조치는 공동 브랜드파트너 모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부부 중 미등록 배우자가 회사의 사업과 관련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등록된 브랜드파트너의 요청이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미등록 배우자가 본 지침 및 회사의 각종 정책을 위반할 경우 등록된 브랜드파트너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1.9 **결혼.** 이미 등록된 브랜드파트너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자 별개의 브랜드파트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타방의 스폰서인 경우, 결혼 후 30일 이내에 둘 중 한 사람은 자신의 브랜드파트너 자격을 포기(탈퇴)하여야 하며, 자격 해지 후 배우자의 공동(부부) 브랜드파트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10 **이혼.** 공동(부부) 브랜드파트너십의 구성원이 이혼하는 경우, 회사는 위 이혼을 이유로 브랜드파트너십의 지위, 후원수당, 다운라인(하위라인) 등을 분할 또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혼 당사자인 공동(부부) 브랜드파트너는 본 정책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향후 누가 브랜드파트너의 지위를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후 최종 결정된 사항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합의서 또는 법정 판결에 의한 서면 통지가 있을 때까지 회사는 이혼이 성립하기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브랜드파트너십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1.11 **회사명의 사용금지.** 브랜드파트너는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그 어떠한 기관의 서류에도 회사를 브랜드파트너의 고용주로 기재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회사를 브랜드파트너의 고용주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1.12 **차명 등록 및 사업활동 금지.** 브랜드파트너는 부모, 배우자, 자녀, 친지 혹은 제3자의 이름으로 브랜드파트너로 등록하거나 활동할 수 없으며, 차명으로 등록한 브랜드파트너십에 대한 현재 혹은 미래의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차명으로 등록된 브랜드파트너십 또는 그 사업활동을 인지하는 경우 해당 브랜드파트너의 자격은 일시 정지되며, 모든 후원수당 및 보너스 프로모션 등은 극 지급이 보류됩니다. 회사는 본 정책 매뉴얼을 토대로 해당 브랜드파트너의 위반 사항에 대해 자격정지 및 자격해지 등의 제재를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전적으로 회사에게 자유재량이 있습니다.

1.13 **독립 사업자 자격.** 브랜드파트너는 독립적인 사업자(계약자) 입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의 가맹점, 합작투자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회사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아니며,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이와 다르게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그 어떤 권한도 없으며, 회사는 브랜드파트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자신의 사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스스로의 판단 하에 사업활동 및 그에 투자할 시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사업활동 시간이 아닌 브랜드파트너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및 손실에 대하여 자신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의,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임차, 운영, 인건비, 법률비용, 설비비, 회계비용 등 브랜드파트너 제반 사업 활동비용과 자신의 사업적 결정에 대해서는 브랜드파트너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1.14 **세금.** 브랜드파트너는 독립 사업자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회사의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취급되지 않으며, 제품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15 **법규 준수 의미.** 브랜드파트너는 브랜드파트너 사업 활동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규,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기대수익 및 자가영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포함한 비용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브랜드파트너에게 있습니다.

1.16 **복수(複數)의 동의서.** 브랜드파트너 등록 희망자가 각기 다른 스폰서를 기재한 두 개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완벽하게 작성되고 가장 먼저 제출된 동의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며, 위 유효하게 처리된 동의서에 기재된 스폰서를 공식적인 스폰서로 인정합니다.

1.17 **개인정보 제출 의무.**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의 동의서 승인과 함께 고유의 회원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브랜드파트너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등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브랜드파트너 가입을 희망하는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후원수당 및 보너스 등은 해당 브랜드파트너십의 대표자(주 사업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됩니다. 회사는 회원 등록 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단, 후원수당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며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및 이용 기간 참조)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브랜드파트너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인증될 때까지 브랜드파트너의 계좌와 연동된 판매, 주문 또는 후원수당 및 보너스의 지급 등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18 **개인정보 수집.** 회사는 브랜드파트너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브랜드파트너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브랜드파트너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브랜드파트너의 개인정보와 브랜드파트너십, 다운라인(하위라인), 후원수당 및 보너스 등 브랜드파트너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 본인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는 미국 본사와 브랜드파트너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회사에 보관된 브랜드파트너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9 **개인정보 이용권한.** 회사는 브랜드파트너가 사전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브랜드파트너의 개인정보 혹은 기밀정보(브랜드파트가 회사에 제공한 브랜드파트너십, 다운라인(하위라인)에 관련된 정보 혹은 브랜드파트너의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미국 본사 기타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거나 서버를 둔 곳에 이전하거나 브랜드파트너의 업 라인 브랜드파트너에게 이전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서 요구될 경우 관련 정부 당국이나 규제당국에 공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기밀정보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는 브랜드파트너로부터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위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앞서 명시된 원칙에 따라 브랜드파트너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해 브랜드파트너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Neora Korea, Ltd. 홈페이지(www.neorakr.com) 및 백오피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0 **정보 변경.** 브랜드파트너는 브랜드파트너 동의서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부정확하거나 허위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동의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동의서의 진실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가 위 통지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브랜드파트너 자격정지 또는 해지를 포함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 동의서에 기재된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브랜드파트너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이를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변동사항은 회사가 완전하게 작성된 변경 신청서를 수령하는 때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브랜드파트너의 회원번호는 변경될 수 없으며, 주소, 전화번호, 공동인 등록 및 탈퇴, 기타 내용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동(부부) 브랜드파트너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사본과 함께 변경 신청서상에는 반드시 대표자(주 사업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21 **권한 없는 행위의 금지.** 브랜드파트너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를 통하여 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a. 회사명(상호), 상표 또는 제품의 등록 및 보유

b. 회사명(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는 URL의 등록 및 보유

c. 회사 제품에 대한 상품등록 또는 승인, 인증의 취득

d. 회사를 대표하는 모든 사업 활동

e. 회사의 정보를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 등 본 정책 매뉴얼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모든 행위

f. 기타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브랜드파트너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은 물론 회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한 모든 법적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파트너는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등록한 회사명(상호), 상표, 제품명 및 URL등 회사의 권리 사항을 즉시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1.22 **비 독점권.** 사업을 위한 마케팅 및 후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독점 영역은 없으며, 모든 브랜드파트너는 특정 사업영역 또는 지위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거나 암시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에게 대리점, 가맹점 영업권 등은 주어지지 않으며, 브랜드파트너는 판매나 후원활동과 관련된 특정 영역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지사를 두거나 사업을 운영하도록 승인한 국가 내에서의 브랜드파트너의 사업 활동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23 **타회사 제품 판매 금지.**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의 제품이 판매되거나 진열된 모든 행사에서 회사의 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없다는 지침에 동의해야 합니다. 브랜드파트너 동의서의 약정 기간 및 브랜드파트너 탈퇴(또는 해지) 후, 6개월 동안 브랜드파트너는 자신이 후원하는 브랜드파트너는 물론 회사의 직원, 대리인 또는 다른 브랜드파트너들에게 직접적, 간접적 수단을 불문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건 다른 회사 또는 경쟁사의 제품 및 서비스 또는 마케팅 플랜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을 위반하는 브랜드파트너는 제품의 구매 또는 후원활동 및 회사의 모든 행사, 세미나 및 프로모션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는 회사와 판매 조직에 발생할 미래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정책 매뉴얼에 따른 제재 이외에 추가적으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24 **브랜드파트너간 제품 판매 금지.** 상위 직급, 후원수당 또는 프로모션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의 다른 브랜드파트너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의 모든 제품, 판매보조물, 인쇄물, 자료 등을 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브랜드파트너는 본 정책 매뉴얼에 따라 브랜드파트너 자격이 제한(자격정지 또는 해지 등) 될 수 있습니다.

a. 브랜드파트너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주문할 수 없습니다.

b. 브랜드파트너는 결제수단 및 제품 구매내용(구성제품, 배송주소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주문하여서는 안 됩니다.

1.25 **커뮤니케이션 제한.** 브랜드파트너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을 회사와 그 직원들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 회사의 파트너, 협력업체, 고문 또는 고용된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섹션 2: 자격보유 기간 및 갱신

2.1 **자격 보유기간.** 브랜드파트너의 자격은 브랜드파트너가 제출한 동의서를 회사가 승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2.2 **비활동.** 최근 6개월의 기간 동안 "활동이 없는" 브랜드파트너의 자격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종료된 브랜드파트너는 6개월 동안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등록된 첫 12개월동안 비활동으로 인해 브랜드파트너가 해지되지 않습니다. 브랜드파트너가 브랜드파트너로서 계속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Neora Korea에 서면 통지를 통해 브랜드파트너로서 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탈퇴의 경우 모든 스폰서십 권리, 현재 직급, 조직도(레그), 커미션 및 보너스에 대한 모든 권리, 브랜드파트너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상실됩니다. 자발적 탈퇴의 경우 6개월 동안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2.3 **자발적 탈퇴.** 브랜드파트너는 Neora Korea에 자발적으로 탈퇴서를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탈퇴는 회사가 서면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유효합니다. 탈퇴한 브랜드파트너는 탈퇴 후 6개월 동안 재가입을 할 수 없으며, 재가입 시점에 처음부터 새로운 브랜드파트너로 시작합니다.

2.4 **자격 정지.** 브랜드파트너는 자격정지로 인해 브랜드파트너의 주문, 커미션,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 지급을 받거나, 다른 브랜드파트너를 모집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자격 정지된 브랜드파트너가 소유한 미지급 커미션 또는 인센티브 지급은 브랜드파트너가 자격이 해제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회사는 자격 정지 사유, 발효일, 자격 정지 기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자세히 기재하여 브랜드파트너에게 자격 정지 사실을 알립니다. 자격 정지 통지는 정책 및 절차 매뉴얼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회사에 등록된 브랜드파트너의 우편 또는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자격 정지로 인해 브랜드파트너의 자격이 종료되거나 해제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가 단독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회사는 자격 정지 기간 동안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및 제품 구매를 금지합니다.

b. 자격정지 기간 중, 브랜드파트너에게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후원수당 및 보너스의 보류

c. 신규 브랜드파트너 또는 우대고객의 스폰서가 되는 것, 본인 레그의 브랜드파트너와 우대고객들에게 연락하는 것 및 브랜드파트너 미팅 참가, 브랜드센터 출입 금지

d. 자격이 정지된 브랜드파트너가 회사의 공식 행사, 강연, 프로모션, 인센티브 그리고 브랜드파트너 미팅 등에 참석 및 회사 소유의 상표, 로고, 저작물, 제품명, 이미지 기타 회사의 모든 자료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격 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위해 브랜드파트너는 자격 정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자격 정지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자격 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 사항을 내용으로 한 서면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위 회사의 결정은 최종 사항이고, 재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자격 정지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항을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거나, 자격 정지된 브랜드파트너와 관련된 새로운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 정지된 브랜드파트너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5 **자격 해지.** 브랜드파트너는 위의 섹션 2.2에 따라 브랜드파트너 계약, 정책 매뉴얼, 보상 계획, 윤리강령,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 및 스팸정책 및 회사에서 게시한 기타 문서의 조건을 위반하여 비활동으로 인해 자격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격 해지란, 브랜드파트너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 및 국제적 특권과 계약상의 권리,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전달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격 해지되면 커미션,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되며, 회사에서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프로모션에 대해 참여가 중단됩니다.

2.6 **자격 해지의 효력.**

자격 해지된 브랜드파트너는 다음에 대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a. 회사의 브랜드파트너로서 자신을 대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b. 브랜드파트너의 최고직급, 유지지급,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커미션 및 보너스,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됩니다.

c. 회사의 제품, 보상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언급하거나 관련된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및 모든 표지, 라벨, 문구 또는 광고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영구적으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d. 회사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브랜드파트너에게 지급(환수)될 커미션, 보너스 및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상쇄할 권리를 가집니다.

e. 자격 해지된 브랜드파트너는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회사에서 받은 혜택 프로그램, 보상, 제품 또는 보너스에 대해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상환, 반환 또는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본 계약의 섹션 2.5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 의무의 조건으로 브랜드파트너에게 환수되어야 할 합리적인 금액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게시한 모든 문서의 조건을 위반한 브랜드파트너는 위반 사항에 따라 회사가 자격 정지를 시키지 않고, 자격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브랜드파트너가 자격 해지될 경우, 브랜드파트너에게 발송되는 서면 내용으로 자격 해지의 유효날짜와 섹션 2.7에 명시된 자격 해지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합니다.

2.7 **이의 제기**. 브랜드파트너는 자격 해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브랜드파트너에게 최종 결정을 통지할 것입니다. 위 해지 통보가 철회되지 않는 한 위 자격 해지는 최초의 자격 해지 통지서 작성일로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14일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당 브랜드파트너의 자격 해지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2.8 **자격해지 재등록.** 자격이 해지된 브랜드파트너의 재등록 신청은 해지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새로운 조직(레그)에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전 다운라인(레그)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자격 해지된 브랜드파트너 또는 브랜드파트너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청을 할 경우, 승인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며, 회사는 위 신청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2.9 **관할법원.** 브랜드파트너의 탈퇴 및 해지와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브랜드파트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섹션 3: 제품 구매 및 판매

3.1 **구매 요구 사항**. 브랜드파트너가 되기 위해 제품 구매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보상 플랜에 의거 제품 구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동의서를 승인한 브랜드파트너는 회사로부터 제품을 회원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3.2 **제품 단종.** 회사는 규제의 변경, 기술의 진보, 원료 개선 등의 이유로 특정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SSO(Smart Shop Order)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 브랜드파트너는 회사가 그와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하며, 기존의 SSO 설정에 따라 그 대체품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배송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품이 단종되어 대체품을 수령한 브랜드파트너는 제품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체품에 대한 가격의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제품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기타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품 요청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교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상품 가격의 5%가 공제됩니다.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상품 가격의 7%가 공제됩니다.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제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우대 고객(PC)의 경우, 상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3.3 **과다 재고 보유 금지.** 회사는 브랜드파트너가 제품을 자신의 개인적인 사용 및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보상플랜에서의 자격 승급 및 유지, 프로모션의 달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과도하게 구입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됩니다.

3.4 **우대 고객 규칙.** 우대 고객(Preferred Customer, PC) 월 SSO 프로그램에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타당성이 없는 우대 고객(PC) 주문은 본인이 직접 서면 승인 없는 주문으로 정의됩니다. 브랜드파트너가 우대 고객(PC)의 동의 없이 우대 고객(PC)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브랜드파트너는 최대 자격 해지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우대 고객(PC) 주문은 어떤 이유로든 브랜드파트너가 결제하거나 배송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5 **주문 방법.** 회사에 제출된 모든 주문 또는 주문서에는 회사가 주문을 처리하고, 배송하는데 필요한 브랜드파트너 또는 우대 고객(PC)의 회원번호, 배송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주문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6 **직접 구매.** 브랜드파트너는 필요한 제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회원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가 스폰서, 업 라인 브랜드파트너 또는 다른 브랜드파트너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는 그러한 회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후원수당 및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회원간 거래행위는 "섹션1 1-24"에 대한 위반으로 본 정책 매뉴얼에 따른 제재 대상입니다.

3.7 **결제 옵션.** 주문은 제품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배송됩니다. 제품의 결제는 현금, 가상계좌 이체, 체크카드, 신용카드 또는 회사에서 인정한 기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위임장 및 결제 요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주문한 제품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 처리되지 않는 경우, 판매 가격에 대한 점수(QV, CV)는 반영되지 않으며, 제품은 배송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가 정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브랜드파트너에게 연락하여 대체 결제 수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처리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8 **주문 오류.** 브랜드파트너는 회원정보, 제품, 결제정보 및 배송지를 주문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문서상의 기재 오류로 인한 주문처리 지연 및 배송 지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브랜드파트너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9 **제품 배송.** 제품의 대금이 정상 결제된 이 후, 회사는 주문된 제품의 배송을 위한 처리를 진행합니다. 주문된 제품이 일시적인 품절(TNA: Temporarily Not Available)로 배송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배송 전에 인수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며, 인수인과 합의하여 배송시기를 조정하거나 일시 품절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만을 우선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일시 품절 제품은 품절 사유가 해소되고 재배송이 가능한 시점에서 주문 순서에 따라 순차배송 되며, 브랜드파트너는 일시 품절로 인해 배송지연이 발생한 제품 또는 제품 전체에 대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10 **파손된 제품.** 배송 업체로부터 제품을 수령하고 그 내용물(제품)이 정상임을 확인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제품 손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수인은 배송 업체로부터 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이

손상된 경우 지체 없이 직원 또는 회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배송 과정에서 파손된 제품을 수령한 구매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a. 파손 제품에 대한 관련 자료(파손 제품 사진)를 확보하십시오.

b. 제품과 함께 동봉된 거래명세서 내용과 주문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파손된 제품명, 수량 등을 체크하십시오.

c. 배송 업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파손된 제품 또는 박스를 보관하십시오.

d. 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고객지원부서에 연락하여 파손된 제품에 대한 회원정보, 주문정보, 제품명, 주문수량 등을 알려주시고 관련 자료(파손 제품 사진)를 제출해 주십시오.

3.11 **가격 변경.** 회사는 브랜드파트너에게 사전 통지 없이 제품, 서비스, 프로그램, 판매보조물 등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3.12 **영수증 및 소매가격.** 브랜드파트너는 회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소매고객들에게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파트너는 소매고객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소매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매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13 **재판매 목적의 제품판매 금지.** 브랜드파트너는 제품의 최종적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든 간적접으로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습니다. 아래 예시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제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a. 소매점을 통해 재판매 하려는 개인 또는 업체

b.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재판매 하려는 개인 또는 업체

c. 회사의 제품이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개인 또는 업체

d. 회사의 목적 및 브랜드파트너의 사업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통방식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업체

e. 회사의 제품을 내용물, 라벨, 포장 등을 추가 또는 제거하여 판매, 유통하는 개인 또는 업체

3.14 **배송 중 분실.** 회사는 배송 업체를 통해 모든 배송 정보를 추적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배송상의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주문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3.15 **배송오류.** 고객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 회사의 실수로 잘못 배송된 경우, 구매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회사에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a. 브랜드파트너 또는 우대 고객은 제품 수령 후, 5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b. 회사에서 요청하는 양식과 함께 주문 영수증의 사본을 회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c. 배송 업체를 통해 회수될 기 배송 제품은 처음 수령하였던 상태 그대로 반환되어야 하며, 반환 배송 도중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3.16 **배송거부.** 브랜드파트너가 회사에 주문한 건에 대해 제품 수령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배송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브랜드파트너 자격을 정지시킬 권한을 가집니다. 모든 브랜드파트너 및 소매 고객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로부터의 배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문된 제품을 수령 받을 고객이 배송을 거부하고, 회사로 반품하는 경우, 주문한 브랜드파트너의 자격은 배송 거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수령하지 않은 물품의 배송비는 브랜드파트너 계좌에서 인출되며, 회사가 배송을 거부하는 타당한 이유(반품의사가 최종 확인된)가 있다고 결정 시, 회사는 브랜드파트너 또는 소매 고객에게 정상적인 반품 절차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3.17 **소매판매.** 회사의 보상플랜은 일대일 대면접촉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판매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약국, 병원, 슈퍼마켓, 건강보조식품점, 쇼핑몰 부스나 그와 유사한 곳,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 또는 오프라인 소매점 및 체인점을 통하여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가 운영하는 소매점 또는 사무실에서의 회사 제품 판매는 사전에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일부 허용되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이며, 위 승인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3.18 **서비스 중심 사업장.** 스파, 리조트 또는 이와 비슷한 사업장에서 회사 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이는 브랜드파트너가 사전에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

3.19 **의료 시설.** 브랜드파트너가 의사 또는 의료업계 종사자인 경우에는 자신들의 병원 또는 시설에서 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파트너가 사전에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

3.20 **제품 전시.** 회사로부터 사전사전에 승인을 받은 브랜드파트너는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 및 사업 기회를 전시회 및 박람회에서 전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파트너는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참가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승인 요청은 행사가 개최되기 적어도 2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브랜드파트너는 어떠한 전시회 및 박람회에도 회사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기회 등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바자회, 벼룩시장, 교환시장 또는 중고품 거래시장 등에서 회사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 기회를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 승인은 1회성으로, 모든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브랜드파트너의 독점적인 참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21 **국제 사업.** 국제적인 후원을 희망하는 독립 브랜드파트너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진출한 국가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국가의 법률 및 본 정책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에 대한 위반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본 정책 매뉴얼 및 동의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브랜드파트너 자격이 즉시 해지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제품, 인쇄물, 판매보조물 또는 마케팅 자료를 다른 국가로 공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3.22 **소득설명 및 주장 금지.** 브랜드파트너는 자신의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지표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후원수당 소득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브랜드파트너는 보상플랜에 대해 정직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브랜드파트너에게 과거의 소득 또는 미래의 예상 소득을 현재의 소득인 것처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며, 다른 브랜드파트너를 후원하는 행위에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불공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허위 및 과장된 진술을 하면 안 됩니다.

3.23 **제품 및 서비스의 주장.** 브랜드파트너는 공식적인 회사 자료에 포함된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거나 대표자를 자처하거나 보증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공식 자료에 포함된 문구만을 사용하여 회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 제품에 대하여 의학적이거나 치유 내지는 치료에 대한 일체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브랜드파트너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 전" 및 "사용 후"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브랜드파트너의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24 **프로모션 아이템.** 회사의 이름이나 로고가 있는 모든 홍보용 품목은 회사 또는 공식 판매처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며, 승인되지 않는 도/소매 업체에서는 구매가 불가합니다.

3.25 **텔레마케팅.** 어떠한 경우에도 텔레마케팅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사업을 함에 있어 절대 텔레마케팅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텔레마케팅"이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게 하거나 회사의 사업 기회에 대한 홍보를 통한 신규 브랜드파트너 모집을 위해 개인이나 조직을 상대로 한 번 이상의 전화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잠재고객 또는 브랜드파트너에게 회사의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 기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는 "콜드 콜(Cold Call)"은 텔레마케팅으로 간주되며, 이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3.26 **온라인 판매 금지.** 회사는 브랜드파트너가

a.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티켓몬스터, 중고나라 등과 같은 정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회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b. 판매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책 위반으로 간주하며, 귀하의 브랜드파트너 계정은 즉시 정지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섹션 4: 후원수당 지급

4.1 **후원수당 정의.** 후원수당이라 함은 보너스, 승급, 인센티브 여행 등 브랜드파트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의미합니다. 보상플랜 및 프로모션에 따른 후원수당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 내용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2 **후원수당 발생 기준.** 브랜드파트너가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동의서를 접수하여 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후원수당은 매월(또는 매주) 마감 전까지 정상적으로 판매가 완료된 부분을 기준으로 각 제품별 판매가격치(QV, CV)의 합산을 통하여 발생 및 지급됩니다. 제품이 아닌 판매보조물(등록 킷(Enrollment Kit)포함)을 구매하거나, 다른 브랜드파트너를 후원하는 방법으로는 후원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후원수당 초과 지급 금지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후원수당 지급 총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3 **후원수당 지급 직급.** 후원수당은 현재 지급 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되고 지급되며, 브랜드파트너는 각 보너스 기간의 종료 시 자격이 되는 최고수준의 직급으로 승급됩니다. 후원수당 및 보너스는 "수당 기준(Paid AS)" 직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4 **후원수당 및 보너스 지급일.** 매월 지급되는 후원수당 및 보너스는 각 지급 기간의 종료 후 익월 16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후원수당은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매주 지급되는 후원수당 및 보너스는 각 지급 기간의 종료 후 돌아오는 수요일(미국 중부 시간 기준)에 지급됩니다. 후원수당은 보상플랜에서 정의하는 "자격을 갖춘" 브랜드파트너에게 지급됩니다. 보상플랜은 후원수당 구조 및 혜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4.5 **최소 지급 후원수당.** 후원수당의 최소 지급 금액은 11,000원입니다. 최소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원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다음 후원수당 지급 금액에 합산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후원수당 지급 비용(송금 수수료)은 해당 브랜드파트너의 후원수당 및 보너스 지급 금액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4.6 **후원수당의 공제.** 반품된 제품에 관하여 발생되고 지급된 후원수당 또는 보너스는 이를 지급받은 브랜드파트너의 책임이며, 회사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위와 같이 지급된 후원수당 상당액을 추후 해당 브랜드파트너 및 업라인 브랜드파트너에게 지급되어야 할 후원수당 및 기타 다른 보너스로부터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후원수당을 즉시 회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후원수당 반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7 **소득 및 세금 신고.** 브랜드파트너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대한민국 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센티브 여행 등으로 지급된 금액도 모두 소득으로 신고되며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는 브랜드파트너(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며, 브랜드파트너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섹션 5: 반품 및 환불

5.1 **보증.** 이 문서 상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회사는 회사로부터 구입되거나 회사를 통하여 구입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기술성, 기타 어떠한 종류의 보증이나 대변도 하지 않습니다.

5.2 **구매자의 취소 권리.** 회사는 고객의 제품 반품 및 환불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품 및 환불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제품과 반품신청서(청약철회 신청서)를 회사로 보내주시되, CS 콜센터를 통해 청약철회에 대한 사전 접수를 우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는 반품 및 환불 요청 제품과 반품신청서(청약철회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품 대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회사는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청약철회 등 권리행사에 따르는 대금 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고객들이 적시에 편리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구매자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한 한도 내에서 피해보상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제계약의 내용은 특수판매공제조합 (www.koss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3 **소매 고객 반품.** 브랜드파트너가 회사의 제품을 소매가에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에 상관없이 브랜드파트너는 소매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그 영수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되어야 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한 소매영수증과 주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매 영수증과 주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브랜드파트너는 소매고객과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소매고객이 다음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a. 주문 제품의 제품명, 수량 및 가격

b. 브랜드파트너의 이름, 주소, 연락처, 회원번호, 전자 우편주소

c. 회사명(상호), 주소 및 연락처

d. 반환기한, 반환방법 및 청약철회에 필요한 서식

e. 제품의 공급 방법 및 시기

f. 제품의 교환 또는 반품 및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g. 소비자 피해보상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및 소비자와 브랜드파트너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h. 거래 약관

i.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및 법적으로 기재가 강제되는 사항 등

소비자에 대한 제품 판매는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소비자를 상대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숙지 및 준수에 대해 독립 브랜드파트너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비자는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의 주문이나 구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매영수증 또는 주문서를 수령한 시기보다 제품을 늦게 인도 받은 경우 제품이 인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혹은 브랜드파트너가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된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에 브랜드파트너나 회사의 주소 등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가 교부된 이후에 브랜드파트너나 회사의 주소가 변경되어 소매고객이 위 지정된 기간내에 주문이나 구매 청약을 취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매고객이 전출한 주소를 알게 되거나, 알 수 있었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의 주문이나 구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한 브랜드파트너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제품을 구매한 브랜드파트너의 소재불명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브랜드파트너에 대하여 청약 철회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회사에 대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제품,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기타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환불이나 교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과 함께 사은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은품을 제품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5.4 **브랜드파트너 반품.** 브랜드파트너는 주문 제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파트너 등록 시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등록 킷(Enrollment Kit) 혹은 등록 팩(Enrollment Pack)을 반품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브랜드파트너는 반품신청서(청약철회 신청서)와 함께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브랜드파트너가 반품을 하는 경우, 회사는 반환된 제품이 포장훼손, 손상, 변질이 되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하여 브랜드파트너의 반품을 받아들이며, 브랜드파트너가 지불한 제품 대금에서 해당 주문으로 발생 및 지급된 후원수당과 법정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브랜드파트너에게 환불하게 됩니다. 법정 반환수수료는 다음을 근거로 결정됩니다.

a.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b.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상품 가격의 5%가 공제됩니다.

c.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상품 가격의 7%가 공제됩니다.

d.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 합니다.

회사는 제품이 반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법정 반환수수료가 공제된 제품 대금의 환불처리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 환불 금액이 신용카드사에 승인취소 됩니다. 단, 승인취소의 확정은 신용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수 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의 경우, 후원수당 계좌로 환불됩니다. 브랜드파트너가 직접 제품을 반품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품 회수를 위한 비용을 반품 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반품을 위해 브랜드파트너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일부 누락되어 반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가 확인되는 시점까지 반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브랜드파트너 후원수당 공제 이외에 해당 주문으로 인한 브랜드파트너의 성취 직급 및 지불 직급(수당을 받기위한 유지직급)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 라인 브랜드파트너들의 성취 직급 및 지불 직급(수당을 받기위한 유지직급)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기 지급된 후원수당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후원수당을 반환 받기 위해 해당 업 라인 브랜드파트너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미래에 지급될 후원수당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파트너들은 회사로부터 후원수당 반환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적법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는 본 정책 매뉴얼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브랜드파트너 자격의 정지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브랜드파트너는 후원수당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법적인 비용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브랜드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제품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기타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품 요청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교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브랜드파트너는 제품과 함께 사은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은품을 제품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5.5 **배송 거부.** 브랜드파트너가 회사에 주문한 건에 대해 제품 수령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배송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브랜드파트너 자격을 정지시킬 권한을 가집니다. 모든 브랜드파트너 및 소매 고객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로부터의 배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문된 제품을 수령 받을 고객이 배송을 거부하고, 회사로 반품하는 경우, 주문한 브랜드파트너의 자격은 배송 거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수령하지 않은 물품의 배송비는 브랜드파트너 계좌에서 인출되며, 회사가 배송을 거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 시, 회사는 브랜드파트너 또는 소매 고객에게 정상적인 반품 절차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5.6 **교환 정책.**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배송 과정에서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배송된 경우에 한하여 제품을 교환해 드립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제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내에 회사에 제품 교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브랜드파트너의 책임 사유로 인해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제품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기타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5.7 **탈퇴 및 보유재고의 반품.**

a. 회사와 사업 관계를 종료하는 브랜드파트너는 보유한 재고에 대해 회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b. 반품은 재판매가 가능하고, 미사용 제품과 판매 보조물로 제한됩니다. 회사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반품 대상이 아닙니다.

c.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반품 요청 시점 사이의 기간에 비례하여 법정반환 수수료가 공제되며,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제품만 반품이 가능하고 3개월(90일)을 초과한 제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d. 브랜드파트너가 제품을 직접 회사에 반품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품 회수를 위한 비용을 반품 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반품을 위해 브랜드파트너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일부 누락되어 반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가 확인되는 시점까지 반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 회사는 탈퇴 이후 발생하는 반품에 대하여 해당 주문으로 인해 이미 탈퇴한 브랜드파트너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기 지급된 후원수당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반품으로 인한 환불 금액에서 기 지급한 후원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f. 또한, 반품 주문으로 후원수당을 수령한 업 라인 브랜드파트너의 성취 직급 및 지불 직급(Paid AS)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기 지급된 후원 수당의 상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후원수당을 반환 받기 위해 해당 업 라인 브랜드파트너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미래에 지급될 후원수당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섹션 6: 스폰서십

6.1 **스폰서십.** 브랜드파트너는 한국 및 회사가 승인한 국가에서 다른 브랜드파트너를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신규 브랜드파트너가 회사의 동의서, 정책 매뉴얼, 보상플랜을 확인하고 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스폰서는 신규 브랜드파트너의 사업을 후원해주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제품의 판매가격치(QV, CV)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다운라인 조직의 브랜드파트너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화상 채팅 및 회의, 회사가 승인한 자료 공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브랜드파트너가 회사의 제품 안내, 판매기술 및 정책 및 절차 준수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파트너의 동기부여를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6.2 **교육 및 훈련의 책임과 의무.** 브랜드파트너는 자신이 후원하는 다른 브랜드파트너들에게 적절한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폰서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판매와 고객 관리 측면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스폰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해야 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다운라인 브랜드파트너들에게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스폰서로서의 직무를 지속적이고 완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다운라인 브랜드파트너를 모니터링하여 부적절한 소득 취득 및 회사와 상관없는 다른 사업 관련 교육을 하거나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운라인의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후원수당만을 수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브랜드파트너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 직급자로 칭하는 NMD이상의 브랜드파트너의 경우 다운라인의 교육 및 훈련의 책임과 의무가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이러한 후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회사가 주관하는 직급인정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3 **소득 설명 및 주장 금지.** 브랜드파트너는 회사 보상플랜의 "수학적" 또는 "이상적" 예상치에 기반한 예상 소득을 잠재적인 브랜드파트너에게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소득 달성은 다양한 변수와 개인의 노력에 딸라 달라지므로 브랜드파트너는 자신의 소득을 다른 이들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지표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후원수당 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케팅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브랜드파트너는 잠재적인 브랜드파트너에게 사업에서 기인하는 보상 및 그 어떤 소득도 예상하여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보상플랜에 대해 정직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야 하고, 잠재적인 브랜드파트너에게 과거의 소득 또는 미래의 예상 소득을 현재의 소득인 것처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잠재적인 브랜드파트너에게 소득과 관련한 그 어떠한 것도 제공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6.4 **후원인 변경.** 스폰서는 신규 브랜드파트너의 후원인을 지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신규 브랜드파트너를 등록 후, 7일 안에 후원인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지정된 경우, 지정한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후원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 후원인 변경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회사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6.5 **스폰서 또는 스폰서십의 변경.** 브랜드파트너는 회사가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스폰서나 스폰서십 라인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며 권장되지 않습니다. 스폰서십 이전에 대한 승인은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속하며, 회사는 스폰서십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십 이전에 대한 승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릅니다.

a. 브랜드파트너가 본인의 스폰서(추천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는 가입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경 가능합니다.

b. 브랜드파트너는 변경 신청서 및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마스킹 처리 후) 그리고 변경 전 스폰서(추천인)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스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브랜드파트너가 다른 그룹(팀, 레그)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그룹(팀, 레그)의 모든 업라인 스폰서 브랜드파트너에게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에 스폰서 변경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서면으로 우선 제출해야 합니다.

d. 회사에서 최종 승인된 스폰서 변경은 브랜드파트너 한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다운라인 조직(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섹션 5.3의 유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6.6 **브랜드파트너와 우대고객의 관계.** 일반적으로 잠재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파트너를 선택하여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잠재고객에게 회사 및 제품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오랜 기간동안 잠재고객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여 그 잠재고객이 일회성 소비자가 아닌 장기적인 우대고객이 되도록 한 브랜드파트너가 있을 수 있는 바, 회사는 이와 같이 잠재고객을 관리하여 장기적인 우대고객으로 등록시킨 브랜드파트너의 노력과 투자는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위 결정에 근거하여 브랜드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우대고객은 그 고객을 우대고객으로 등록시키고자 사업 활동을 전개한 기존 브랜드파트너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 브랜드파트너가 해당 우대고객의 스폰서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섹션 7: 상속 및 조건

7.1 **브랜드파트너십의 양도.** 브랜드파트너는 회사 규정에 따른 상속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신의 조직(또는 조직에 대한 권리)을 다른 브랜드파트너 또는 개인에게 판매, 양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 동의서와 관련된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 및 의무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이전)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증서도 인정하지 않으며, 양수인은 그 권리 및 의무의 양도(이전)가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한 해당 브랜드파트너십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 및 권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위 동의서와 관련 법률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며, 브랜드파트너십은 물론 어떠한 권리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7.2 **브랜드파트너십의 상속.** 브랜드파트너는 대한민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브랜드파트너십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러한 상속에 대한 신청서, 브랜드파트너 동의서, 사망 증명서, 유언장, 신탁, 기타 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모두 수령하여 공식적으로 상속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상속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상속을 승인한 경우, 브랜드파트너십을 상속받는 신규 브랜드파트너는 기존 브랜드파트너십의 모든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또한 회사의 브랜드파트너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을 제외한 브랜드파트너십의 양도/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브랜드파트너가 사망할 경우, 그 브랜드파트너의 자격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브랜드파트너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랜드파트너십의 상속인은 법률 및 본 정책 매뉴얼이 규정하는 브랜드파트너 등록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브랜드파트너십의 상속은 법정 상속인의 상속을 표명하는 관련 법적 문서가 회사에 제출되었을 때 또는 법원 명령 등이 상속을 표명하는 관련 법적 문서가 회사에 제출되었을 때 또는 법원 명령 등이 회사에 송달되었을 때 회사에 의해 인지됩니다. 브랜드파트너십 상속에 의하여 공동(부부) 브랜드파트너십이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파트너십의 구성원들 중 대표자(주사업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브랜드파트너십의 상속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브랜드파트너십은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상속절차가 완료된 시점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7.3 **상속 조건.**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의 정책 매뉴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정책 준수 위반으로 인한 유예기간, 자격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브랜드파트너십 상속에 대하여 상속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4 **정책 기만.** 브랜드파트너십의 상속이 동의서 및 본 정책 매뉴얼 또는 보상플랜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작된 것이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브랜드파트너십의 상속은 무효로 되며, 브랜드파트너의 자격은 상속 이전의 브랜드파트너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브랜드파트너십의 상속 절차가 부적절한 방법에 의해 처리된 경우 회사는 브랜드파트너 동의서 및 본 정책 매뉴얼에 따라 관련된 브랜드파트너들의 자격정지 또는 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 8: 일반 규정

8.1 **면책 동의.** 브랜드파트너는 본 정책 매뉴얼 및 동의서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및 이러한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회사의 브랜드파트너로서 활동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법적 책임, 손실, 비용 혹은 관련 경비 등으로부터 회사, 주주, 경영진, 이사진, 직원 등의 책임을 면책시킬 것과 회사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배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2 **기타 서비스 및 제품.**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판매되거나 전시되는 행사 또는 장소에서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외한 타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마케팅,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를 홍보하는 것 또는 회사 제품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됩니다. 상기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거나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회사의 서비스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8.3 **책임 제한.** 브랜드파트너가 a) 동의서 및 정책 매뉴얼의 조항을 위반한 결과, b) 사업을 운영한 결과, c)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데이터 또는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결과, d) 제공한 자료가 저작권 위반 사항을 포함한 결과, e)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데이터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지 못한 결과, 브랜드파트너에게 발생했거나 브랜드파트너가 겪게 된 후원수당 미지급 및 직/간접적, 특별적 또는 우발적 손해 또는 기타 다른 손실에 대한 모든 배상 청구로부터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8.4 **손해 제한.** 브랜드파트너는 회사 및 그 계열회사, 경영진, 이사진, 직원 및 기타 대표자들의 회사 업무 수행/비수행과 관련하거나 브랜드파트너와 회사간의 사업관계나 기타 다른 사항과 관련된 무작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이익의 손실, 부수적 손해, 특별 손해, 우발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 및 그 계열회사, 경영진, 이사진, 직원 및 기타 대표자들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및 그 계열회사, 경영진, 이사진, 직원 및 기타 대표자들은 대한민국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8.5 **기록 보관.** 회사는 브랜드파트너들이 모든 사업상의 거래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8.6 **유인행위 금지.** 브랜드파트너가 회사의 영업권, 기밀 정보, 소유권 및 사업 기밀 정보와 브랜드파트너에 의해 구성된 판매 조직의 일관성 및 안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브랜드파트너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및 자격 종료 후 일정 기간동안 회사의 브랜드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다른 브랜드파트너를 다른 회사로 모집, 유인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며, 본 조항의 준수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 유인행위 금지 조항은 브랜드파트너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보장, 보호합니다. 본 정책 매뉴얼에 의해 주어진 모든 권리에 따라 브랜드파트너는 자격 유지기간 및 자격 유지 종료 후, 2년의 기간 동안 그 어떠한 사유로도 직/간접을 불문하고 회사의 브랜드파트너를 다른 직접판매, 다단계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도록 모집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본 정책 매뉴얼에 따라 이 조항은 브랜드파트너가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및 기간 종료, 탈퇴, 상속 및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동안 유효하며, 브랜드파트너는 대한민국 또는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기타 다른 국가에서 회사의 제품과 유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그 어떠한 이유로든 판매, 홍보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본 정책 매뉴얼에 따라 브랜드파트너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동안 및 탈퇴(또는 해지) 후, 6개월동안 직/간접을 불문하고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외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또는 홍보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브랜드파트너는 다른 라인(형제레그)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브랜드파트너에게 라인을 변경하도록 권유, 유도 혹은 방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 라인을 해체하고, 다른 라인에 재등록을 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금전적 또는 유/무형의 인센티브 제안 등) 이러한 라인 유도에 대한 행위가 확인되거나 감지될 경우, 회사는 정책 매뉴얼에 의거하여 즉시 브랜드파트너의 계정을 정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8.7 **동의서 및 정책 매뉴얼 개정.** 회사는 본 정책 매뉴얼 및 동의서, 제품(회원)가격 및 소매가격 등을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시기에 사전통지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개정사항은 회사의 공식 출판물, 웹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시되며, 이메일, SMS, 그리고 SNS를 통하여 공지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게시 및 공지된 날 또는 지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브랜드파트너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전 문서나 정책과 개정의 내용이 서로 상충할 경우 개정안이 우선합니다.

8.8 **권리불포기(Non-Waiver).** 회사가 정책 매뉴얼 하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브랜드파트너들의 의무와 본 문서의 내용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 경우 및 다양한 당사자들의 일부에 대해 본 정책 매뉴얼을 지키지 않거나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정책 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준수를 요구하는 회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브랜드파트너의 특정 의무 불이행에 대한 회사의 면제는 그 의무 불이행에 관련된 회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애가 되지 않으며, 다른 브랜드파트너의 권리나 의무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회사 권리의 행사 지연 또는 불행사는 의무불이행 또는 추후에 발생할 의무 불이행에 대한 회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 의한 면제는 경영진의 구성원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8.9 **완전 합의.** 본 정책 매뉴얼은 회원수첩 및 브랜드파트너의 백오피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관계와 관련하여 모든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8.10 **불가항력.** 회사는 파업, 노동분쟁, 전쟁, 화재, 정부 법령이나 명령 또는 당사자의 평소 공급원 삭감과 같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11 **통지.** 브랜드파트너 또는 회사가 서로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거나 전달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통지 또는 요청은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와 같이 서면으로 된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또는 서면과 전자형식 모두에 의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인정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등기 또는 배달증명 우편, 우편 요금 선납, 수령통지 또는 인편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어떠한 당사자라도 상대방에게 통지를 위하여 본 섹션에 설명된 방법으로 주소 변경에 대한 서면상의 통지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통지 또는 요청은 인편에 의해 교부 송달된 날짜에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경우 그 발송이 확인된 날 도달하였거나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우편에 의한 전달의 경우에는 수령통지 또는 기타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8.12 **분리성.** 해당 사법적 관할권 내에서의 모든 법칙이나 규칙에 비추어 본 정책 매뉴얼을 포함한 동의서의 조항이나 회사가 규정한 어떠한 명세, 표준 또는 운영 절차가 무효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회사는 무효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조항, 명세, 표준 또는 운영 절차나 그에 포함된 어떤 내용이든 관할권 내에서 유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정을 가할 권리를 보유하며, 브랜드파트너는 그러한 모든 수정안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을 받습니다. 위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필요한 사법적 관할권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8.13 **위반.** 모든 브랜드파트너는 본 정책 매뉴얼의 고결성을 인정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파트너의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브랜드파트너는 위반행위를 범한 브랜드파트너와 직접 논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되는 위반 행위는 회사의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행위는 회사의 koreacompliance@neora.com에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8.14 **불공정 행위.** 회사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인한 가입, 제품 구매, 보상플랜 악용의 사례에 대하여 정책 매뉴얼에 의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부정적인 경로 또는 개인 동의 없이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브랜드파트너 또는 우대 고객으로 가입시키는 행위

b. 허위 정보(주소, 연락처 등)로 브랜드파트너 또는 우대 고객으로 가입하는 경우

c. 커미션, 보너스 및 기타 프로모션의 수령(달성) 조건 그리고 직급 달성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본인 다운라인(레그)에 가입된 브랜드파트너 또는 우대 고객 코드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d. 위 a,b,c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브랜드파트너를 정책 매뉴얼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고, 자격 정지 및 해지등의 징계, 후원수당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섹션 9: 독점적 정보

9.1 **기밀유지 의무.** 회사는 브랜드파트너가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동안 브랜드파트너에게 조직도 및 다운라인 보고서, 고객 리스트, 회사가 개발 중이거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보, 브랜드파트너 리스트,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 정보, 사업 보고서, 후원수당, 판매 및 기타 재정정보, 수익성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기밀적 또는 독점적인 정보, 기밀적 또는 독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 비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서면상이든 전자적 형태이든)는 기밀성 또는 독점성이 있거나 기업 비밀이며, 회사는 최고 수준의 신뢰에 기초하여 브랜드파트너가 회사와의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에만 이를 브랜드파트너와 공유할 것입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이러한 기밀적, 독점적 정보 및 기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제3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개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및 그 이후에도 회사의 프로그램과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회사와 경쟁하기 위한 목적 기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위와 같은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가 더 이상 그 자격을 갖지 못하거나 자격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브랜드파트너는 위와 같은 기밀적, 독점적 정보 및 기업비밀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모든 기밀적, 독점적 정보 및 기업비밀을 회사에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위 정보를 반환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설령 그 정보가 활용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브랜드파트너에 대해 본 정책 매뉴얼에 따라 브랜드파트너 자격의 정지 또는 해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2 **저작권 사용 제한.** 브랜드파트너는 회원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저작권 사용 제한 및 저작권 보호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회사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가 그 저작물에 대한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브랜드파트너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한 브랜드파트너는 그 자격을 정지 혹은 해지 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9.3 **협력업체 및 과학 자문 위원회 등과 접촉 금지.** 브랜드파트너는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 사업의 소개 또는 추진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회사의 협력업체,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연구자들과 회사의 사업 관계는 기밀 사항입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그 어떠한 공급업체, 제조업체 또는 연구자에게도 연락을 취하거나 이들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습니다.

섹션 10: 상표, 인쇄물 및 광고

10.1 상표.
회사명(상호), 상표, 로고, 서비스표 및 회사의 제품명 등 저작권이 있는 모든 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크 및 자료의 사용은 본 정책 매뉴얼의 철저한 준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직 회사만이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 및 인쇄물을 생산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회사가 생산하지 않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제품 및 기타 홍보물 등에 회사명(상호)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홍길동
독립 브랜드파트너
Neora Korea, Ltd.

브랜드파트너가 회사명(상호), 상표, 로고, 서비스표 및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온라인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려면 위 예시와 같이 자신이 독립 브랜드파트너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외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명(상호), 상표, 로고, 서비스표 및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 참여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조건 사항은 물론 본 문서 내의 회사 정책도 준수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koreacompliance@neor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2 전화번호부 광고. 브랜드파트너는 전화번호부(인터넷 전화번호부 포함)에 회사의 상표와 함께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회사의 상표 하에 전화번호를 포함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부 광고는 다음과 같이 표기될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으며, 위 승인은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시) 홍길동
Tel: 010-0000-0000
독립 브랜드파트너
Neora Korea, Ltd.
*상기 본인은 Neora Korea, Ltd.의 '독립 브랜드파트너'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10.3 명함. 브랜드파트너는 명함에 회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회사가 승인한 그래픽 양식(디자인, 내용, 규격 및 기타)과 문구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의 명함에는 해당 브랜드파트너가 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판매원임이 명백하도록 반드시 "독립 브랜드파트너"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0.4 인쇄 및 전자광고. 브랜드파트너는 회사, 제품, 사업기회, 보상플랜 등 제품판매 및 잠재고객 유치를 위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광고 및 광고매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작 배포하거나 브랜드파트너가 제작하고 회사가 승인한 광고 자료는 인쇄물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포함한 전자미디어상에서 브랜드파트너의 비즈니스를 광고하거나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일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누구도 회사가 제작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은 회사명(상호), 로고, 상표 또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인쇄물 및 자료는 사전에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음 없이 복제되거나 재인쇄될 수 없으며, 회사의 동의 또는 승인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보류될 수 있습니다. 독립 브랜드파트너가 제작한 광고 자료는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0.5 인쇄물 및 온라인 광고. 회사의 상표, 로고, 상호 등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 문구 및 이미지를 사무실, 점포, 주택 또는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간판, 배너 등) 또한,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홍보물(브로셔, 포스터, 명함 등)을 제작,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오로지 회사가 제공하거나 또는 정책 매뉴얼에 의거하여 제작되고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홍보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업기회 및 제품의 홍보 및 판매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브랜드파트너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blog), 카페(café), SNS 및 스폰서 링크 등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회사와 관련된 웹페이지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브랜드파트너는 개인 웹 사이트를 검색 엔진 또는 웹디렉토리 키워드로 등록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적재산권이나 독점정보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회사, 제품 및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를 광고할 수 있으며, 회사, 제품 및 사업기회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불특정 개인에게 관련 자료를 전손(Spam, 스팸)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회사, 제품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회사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브랜드파트너에게 공정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며, 나아가 브랜드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0.6 **인터넷.** 회사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그 존재를 유지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인터넷상에서 Norea™, LLC 및 Neora Korea, Ltd.라는 회사명(상호), 회사의 상표 및 Neora™, LLC 로고를 포함하는 제품명, 상표, 상호 또는 제품에 관련되거나 혼동스러울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서 회사가 사용하는 독특한 문구를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회사명(상호), 상표 및 기타저작권이 있는 상표, 상표명, 회사, 제품 그리고 사업기회 정보 혹은 제품, 회사임원, 구성원, 회사 사무실 및 건물 등과 같이 회사와의 관련성을 암시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이를 인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브랜드파트너가 자신의 개인 웹사이트로부터 회사 웹사이트로 직접 갈 수 있는 온라인 링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브랜드파트너는 서면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그 승인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링크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10.7 **선물 및 특별할인 금지.**

회사의 독립 브랜드파트너가 그들의 조직이나 팀에 우대고객 및 잠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쇄, 전자 또는 구두상의 광고를 통하여 선물을 제공하거나 특별할인을 해준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광고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공표됩니다. 회사의 독립 브랜드파트너는 우대고객을 포함한 잠재 고객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도상 특정 위치 배정을 광고하거나 약속할 수 없습니다.

10.8 **소셜 미디어.**

a. 회사의 브랜드파트너는 독립적인 사업 활동에 있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셜 미디어를 사업에 사용하는 브랜드파트너는 본 정책 매뉴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포스팅(posting)의 내용은 고객, 브랜드파트너 및 잠재 고객을 포함하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매뉴얼 절차는 회사 브랜드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여 브랜드파트너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b. 회사의 공공 포럼(KaKao, Instagram 등)상에 게시되는 브랜드파트너의 포스팅(posting)은 다른 브랜드파트너, 우대고객 및 잠재 고객들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본사 공식 홈페이지는 사업 운영, 판매 유치, 브랜드파트너 개인 사이트로 방문자 유치 또는 다른 브랜드파트너를 모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의 상표화된 브랜드 이름을 개인적인 웹페이지 등에 사용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이를 본사 공식 홈페이지로 혼동하거나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d. 브랜드파트너는 자신의 독립 사무실을 본사 사무실인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파트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자신이 회사의 독립 브랜드파트너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e. 브랜드파트너는 사업을 위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의 이름으로 "Neora Korea, Ltd. 독립 브랜드파트너"라는 문구를 사용할 것이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공식적" 또는 이와 비슷한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KaKao, Instagram등 기타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도 Neora 또는 Neora Korea, Ltd. 라는 이름은 단어의 순서 배열을 불문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f. 모든 독립 브랜드파트너는 KaKao, Instagram 등을 포함한 SNS와 소셜 네트워킹 공간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사진, 추천글, 진술, 마케팅 자료 등)가 섹션 10.5 인쇄물 및 온라인광고 조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및 의료관련 언급, 소득관련 언급과 비난성 커멘트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승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Koreacompliance@neora.com 또는 Koreasupport@neora.com,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브랜드파트너 자격이 해지된 경우, 10일 이내에 소셜 네트워킹 프로필을 포함하여 회사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해야 합니다.

h. 회사는 본 정책 매뉴얼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블로그, SNS 또는 웹사이트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브랜드파트너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i. 소셜 미디어 지침의 위반은 최대 브랜드파트너의 자격 해지를 포함한 징계 대상입니다.

j. 모든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의 독립적인 브랜드파트너이며 그들의 모든 SNS 계정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독립 브랜드파트너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홍길동, 독립 브랜드파트너, Neora Korea, Ltd." 위 예시에 한해서만 "Neora"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Neora"사용이 허용되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k. 모든 독립 브랜드파트너는 "Neora"이름을 URL 도메인, 하위 도메인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Neora"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l. 소셜 미디어 항목에 대한 정책 매뉴얼 변경 시, 브랜드파트너는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해야 하며, 이러한 변경 사항을 준수할 책임 역시 브랜드파트너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본 정책 매뉴얼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고, 위반 대상 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것이며, 위반을 범한 브랜드파트너는 이러한 회사의 요청을 이행해야 합니다.

10.9 **지지.** 회사 경영자 또는 제3자로부터의 지지는 회사의 인쇄물 및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명시적으로 공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브랜드파트너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이 정부 기관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승인 또는 지지를 받았다고 말하거나 언급할 수 없습니다.

10.10 **독립 커뮤니케이션.** 브랜드파트너는 "섹션 10"에 따른 제한에 의거하여 각자의 다운라인에게 회사, 제품, 사업정보 및 지침을 공유하되, 이때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회사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10.11 **의료적 관련 언급.** 브랜드파트너는 회사의 어떤 제품에 대하여든 의학적 언급(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의학적 관리를 받고 있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고객의 경우,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10.12 **브랜드파트너 서비스.** 회사는 활동상태(Active)의 모든 브랜드파트너에게 백오피스를 통해 조직관리, 교육/훈련, 커뮤니케이션, 제품 및 배송정보, 사업 자료 등을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회사는 지급 기간동안 다운라인 판매 보고서 및 후원수당 정보를 포함하여 브랜드파트너의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13 **촬영 및 녹음 금지.** 브랜드파트너는 회사 제품, 연수 및 교육, 행사, 강연과 관련된 회사의 인쇄물, 오디오와 비디오, 발표자료 등을 판매하거나 사적인 용도를 위하여 가공 또는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연수 및 교육, 행사, 강연 등의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화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10.14 **전화 응답.** 브랜드파트너는 잠재고객 및 소비자와의 전화 통화 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과 전화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회사의 독립 브랜드파트너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10.15 **법적 책임.** 정책 매뉴얼상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브랜드파트너 자격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반을 행한 브랜드파트너는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섹션 11: 윤리 규정

회사는 브랜드파트너들이 공평성, 정직성, 고결성 및 서비스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믿습니다. 회사와 브랜드파트너, 브랜드파트너와 타인들의 관계는 최고 수준의 윤리강령에 따라 유지, 보호 및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브랜드파트너는 섹션 11의 모든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지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회사의 브랜드파트너로서 다음의 윤리규정 준수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1.1 회사의 브랜드파트너로 활동하는 동안 모든 거래를 정직하고 공평하게 할 것입니다.

11.2 회사의 소매고객이나 브랜드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연락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것입니다. 회사 사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연락하는 모든 이들을 배려하며 존중할 것입니다.

11.3 모든 전문적인 활동을 본인의 명성과 회사의 명성을 모두 고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11.4 본인의 사업 조직에 있는 브랜드파트너들을 연수시키고, 지원하는 등 스폰서로서의 리더십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11.5 기만적, 불법적 행위나 동의서 또는 정책 매뉴얼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11.6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진단적, 치료적, 치유적 주장이나 회사의 공식 인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장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본인의 개인적인 체험사례 역시 판매 수단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경우 "레이블을 벗어난 주장(과장광고 혹은 허위광고)"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각 인체는 전부 달라서 다른 제품에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 만을 대변할 것입니다.

11.7 Neora의 제품에 대하여 과장광고 혹은 허위광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어떤 상황이건 "사용 전", "사용 후" 사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11.8 회사의 보상플랜에 대한 이상적인 예상은 반드시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며, 회사의 보상플랜에 대한 수입을 주장하거나 대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네트워크도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발전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수입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브랜드파트너의 성공은 사업에 투자하는 시간의 정도와 조직능력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11.9 본인은 자가영업세, 소득세, 판매세, 라이선스비 및 이와 관련된 개인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회사의 브랜드파트너로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재정적 및/또는 법적 의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11.10 소매고객과 거래 시 본인은 항상 소매고객에게 '섹션 5, 소매 고객 반품' 조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11.11 본인은 자본주위가 전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경제 체제임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이며, 공격적으로 경쟁하되 공평성을 잃지 않으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전문가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본인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독점적 위치 또는 조직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판매 자료나 전문직 협회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는 브랜드파트너들의 개인적인 독립성 증진에 기여하는 명망 있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1.12 브랜드파트너는 회사 및 그 경영진이나 직원 또는 다른 브랜드파트너들에 대한 비방, 보상플랜의 악용, 회사가 승인하여 활용 중인 연수 시스템과의 상충, 회사의 다른 브랜드파트너, 고객, 직원 또는 계열회사들을 향한 모욕적이거나 불경하거나 위협적인 행동, 회사와 브랜드파트너간의 관계나 브랜드파트너들간의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 어떠한 방식으로든 허위적이고, 기만적이고, 정직하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또는 회사가 회사의 평판을 저해하거나 다른 브랜드파트너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는 행위 등 회사나 다른 브랜드파트너의 명성이나 사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지장을 주거나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1.13 브랜드파트너는 선의와 공정한 거래의 의무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브랜드파트너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본인, 가족 구성원 또는 제3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은 브랜드파트너 계약 조건을 위반하도록 돕거나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회사 또는 브랜드파트너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11.14 브랜드파트너는 허위매출(후원수당 수령 후, 의도적 반품행위 등) 또는 대량반품 등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방관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이런 행위가 확인된 경우, 매출취소, 후원수당 환수, 법적조치 등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지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자격 정지 및 해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